

‘24.10.1.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에 따른

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사업주체 안내사항

※ 본 내용은 ‘24.10.1. 기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고 계신 분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.

I 사전청약 당첨 시 사용한 청약통장 효력 복원

사전청약 당첨 시 사용하여 상실되었던 청약통장(이하 ‘당첨통장’이라 함)의 효력이 ‘24.10.1. 기준으로 일괄 복원되오니,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① 당첨통장을 ‘24.10.1.까지 해지하지 않은 분
→ ‘24.10.1.부터 즉시 재사용 가능 (별도 조치 불필요)
- ② 당첨통장을 ‘24.9.30. 이전에 해지하고 신규 청약통장을 개설하신 분
→ 둘 중 원하는 청약통장 선택 가능

- | |
|--|
| (1) 당첨통장을 선택하려는 분 : 당첨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하여 부활 처리
(신규 청약통장은 해지 필요)

- 기한 : ‘24.10.1.~‘25.9.30. (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)

- 은행별 부활 처리 방식 및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|
|--|

- | |
|--|
| (2) 가지고 있는 신규 청약통장을 선택하려는 분 : 별도 조치 불필요
(당첨통장은 부활되지 않음) |
|--|

- ③ 당첨통장을 ‘24.9.30. 이전에 해지하였으나 신규 청약통장을 개설하지 않은 분
→ ②의 (1)과 동일하게 처리

※ 금번 복원된 청약통장의 효력은 본청약에 참여하여 입주자로 확정당첨되는 시점에 다시 상실됩니다. (본청약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실되지 않음)

※ ‘24.10.1.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에 따라 함께 시행되는 ‘청약예·부금의 종합저축 전환 허용’ 제도와 관련하여,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 상태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청약예·부금의 종합저축 전환이 불가합니다.

II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 중 다른 주택 청약 허용

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 청약이 불가하였으나, '24.10.1.부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.

- (기존)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으며,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경우 다른 주택에 청약 가능함
- (개정)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음 * 단, 다른 사전청약 주택에는 청약 불가(민간·공공 불문)
다만, 다른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상실하여 본청약에 참여할 수 없음

III 본청약 시 유의사항

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른 주택*에 당첨된 경우 본청약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약에 참여하여 입주자로 확정당첨된 경우 **부적격 당첨자**로 처리되어 최대 1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* APT, 계약취소주택, (규제지역)무순위 등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7호에 따른 '당첨자'로 관리되는 주택

- ① 사전청약 당첨자 **본인**이 다른 주택에 당첨되었음에도 본청약에 참여한 경우
→ 본청약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, 본청약 시 사용한 청약통장 효력 **미복원**
- ② 사전청약 당첨자의 **세대원**이 다른 주택에 당첨되었음에도 본청약에 참여한 경우
→ 본청약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, 본청약 시 사용한 청약통장 효력 **복원**

※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참여 시 유의사항

사전청약 당첨자	본인 및 세대원의 다른 주택 당첨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본청약 참여 * 당첨 사실 확인 경로 : 청약홈 > 청약소통방 > APT당첨사실 조회 (본인 및 세대원 각각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조회)
	본청약 참여 시 입주자로 확정당첨되므로, 동일 단지 일반 입주자 모집공고에 청약해서는 안 됨 → 동일 단지에 중복당첨되는 경우 둘 다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 불가

※ 사전청약 사업주체 본청약 진행 시 유의사항

<p>사전청약 사업주체</p>	<p>본청약 전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참여 의사 최종 확인 시, 본인 및 세대원의 다른 주택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본청약에 참여하지 않도록 안내 (참여 시 부적격 처리됨을 고지)</p>
	<p>본청약 전 사전청약 당첨자의 '당첨사실 확인서'*를 제출받아 당첨이력 확인 * 발급 경로 : 청약홈 > 청약소통방 > APT당첨사실 조회</p>
	<p>본청약 입주자 선정 이후 관련 자격검증 진행</p> <p>① (부동산원→사업주체)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의 다른 주택 당첨 사실 검색 결과 제공</p> <p>② (사업주체↔당첨자) 다른 주택 당첨 사실 관련 소명 절차 진행</p> <p>③ (사업주체→부동산원) 최종 부적격자 명단* 통지</p> <p>* 부적격 사유가 사전청약 당첨자 본인의 다른 주택 당첨 사실 때문인지, 세대원의 다른 주택 당첨 사실 때문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통지</p>